



▶ 보도자료 (2014.5.29(금) 오전)
<인터넷 5.23(목) 13:00 이후>
홍영환

보도자료

“함께 일하는 나라, 행복한 국민”

- ❖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김 왕
사무관 신 우 승
☎ 044-202-7685
- ❖ 대검찰청 공안3과 과 장 배 용 원
검 사 진 현 일
☎ 02-3480-274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(알림마당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고용부와 검찰, 고위험사업장 등 긴급 합동단속 실시

- 26일(월)부터 3주간 사업장 1,100여 곳 대상 -

- 고용부와 검찰은 이달 26일(월)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,1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.
-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를 더욱 강력하게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1개월 여 앞당겨 실시하며, 단속 대상*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.

<단속대상 사업장>

- ① 공정안전관리(PSM)* 등급이 불량하거나, 설비의 정비·보수 작업이 진행중인 곳으로 화재·폭발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학업종
- ② 장마철 위험공정이 진행중이거나 지하방수공사 등으로 인해 침수, 붕괴, 감전, 질식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
- ③ 그 밖에 재해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

-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 및 지방 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.

- 이번 단속은 ▲위험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▲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▲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 수몰·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에서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로 했다.
- 특히,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, 원·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정밀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다.
-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“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으로 실시할 예정”이라고 강조하면서
- “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 확행될 수 있도록 범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,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 사용중지 명령 발동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신우승사무관(☎ 044-202-76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